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검정 동물약품 검정규칙(농림수산부령 제 1123(93. 6. 22)에 의거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관리요령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다.

농림수산부 고시 제 '93-33호

약사법 제 45조, 제 72조의 6 및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규칙 제 5조,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3. 7. 27.

농 림 수 산 부 장 관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관리요령

제 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72조의 6에 따른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검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동물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검정품의 취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용기에 포장하여 제조번호별로 봉인에 적합하도록 구분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3조 제4항에 의한 검정제품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3조(검정의 신청) ①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검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국가검정을 받고자 하는 동물용의약품중 검정에 필요한 시공품을 채취하고 검정 신청수량 전부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③ 채취한 시공품은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발췌 확인서를 부착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4조(관리요원의 지정)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검정품의 시료발췌 및 유통관리를 위하여 동물약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를 "동물용의약품 관리요원"(이하 "관리요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5조(관리대장) 검정을 신청한 자는 검정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6조(검정결과의 통지) ① 검정기관이 검정품을 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정 결과를 검정신청자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정신청자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검정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관리요원 책임하에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봉인 및 해제시 검정품 및 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7조(국가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검정이 면제된 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 제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조사 및 시공품을 발췌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검정품의 표시) ① 국가검정제품 최소포장단위의 포장자재 및 상표에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별표 1"의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시는 다른 문자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 9조(사후관리등)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검정품의 적정 관리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 이후 포장자재 전여분에 대하여는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을 표시하는 증지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국가검정 동물약품 검정수수료등 납부규정(농림수산부 고시 제92-7호 : '92. 1. 4.)은 폐지된다.
4. 수입 동물용의약품은 국문표시사항에 이 고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국가검정 절차는 상공부 통합공고에 의한다.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농림수산부 공고 제 93-38호 : 93. 7. 19)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내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의 견 내 용
제9조(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등) ①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등) ①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등) ① 현행과 동일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94. 9. 1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생 략) ③(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생 략) ④(기 타)(생 략) ⑤(신 설)	①.....(좌 등) ②.....(좌 등) ③.....(좌 등) ④.....(좌 등) ⑤(타 법률의 적용) 이 법은 사료에 혼합 또는 첨가되는 것 중 외약품으로 분류되는 제제외 제조 수입 또는 판매등에 관하여는 약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의견 사유

1) 보조사료 허가제 존속에 대하여

사료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료로 규정할 수 없는 농산부산물등이 보조사료에 이용되고 있어,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케 할 경우 부정 유동 및 오용의 우려가 커 현행대로 운용 되어야 할 것이며, 각 시·도지사에 위임되고 있는 성분 등록등의 사항은 사료 전문 조절기능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임 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칙중 예외조항 신설에 대하여

가. 입법예고(안)중 신설 되어있는 '혼합사료'는, '배합사료' 또는 기타의 사료의 정의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개념이 모호하여 혼란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혼합사료 규정 신설의 목적이 '원전혼합배합사료(T·M·R)'나 자가 배합사료 및 현행 사료관리법상의 사료등 이외에 풍기·부산물이나 가공사료등의 적정관리에 있다면 배합사료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 목적에 적합 하도록 규정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 불가분 사료 산업의 다양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배합사료와 별도로 구분 관리코자하는 경우 입법예고(안)중 혼합사료와 같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보다 관리코자하는 목적과 부합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 사료의 위생과 적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금속 등이 다량 함유된 유해사료 및 잔류로 인한 공중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동물약품이 혼합된 사료의 수입을 방지할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라. 또한 입법예고(안)의 보조사료의 정의와 영양 성분의 개념이 추가된 것에 대하여 우리 업계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부령 제 11145로 : 93. 2. 22) 개정고시와 관련 업계간 상호 이견이 심층한 예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로 제자운운코자 하는 의도를 심히 이해기 어려운 상황으로 무고한 범위 확대 개정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 우리 업계의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사료업계 일부에서 부령 제정시 적정하게 규정하자는 식의 논리로 금년 초 부령 제정시와 같은 이전인수식 편견으로 업권을 신장코자 하는 모색을 간과 할 수 없는 바,

바. 혼합사료로 정의코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동물약품의 무작위적 사용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해와 유해물질 잔류로 인한 양축농기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약사법에 규정한 동물약품은 제외]를 규정하여 주실것을 암망 합니다.